



www.goesan.go.kr

제1171호 2025년 4월 25일(금)

선 람	기관의 장

군 보

조 례

- 괴산군조례 제2951호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괴산군조례 제2952호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괴산군조례 제2953호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괴산군조례 제2954호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1
- 괴산군조례 제2955호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규 칙

- 괴산군규칙 제1443호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7

고 시

- 괴산군 고시 제2025-103호
사방지 변경 지정·고시 ----- 30

공 고

- 괴산군 공고 제2025-446호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33
- 괴산군 공고 제2025-473호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47

회람								
----	--	--	--	--	--	--	--	--

발행 : 괴산군, 편집 : 기획홍보과(괴산군 괴산읍 임객정로 90) 830-3022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괴 산 군 수

2025년 4월 25일

괴산군조례 제2951호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④ 보훈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 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훈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제1항 중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생활보조수당 (이하 “수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및 제10조제3호 중 “보훈명예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독립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							1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보훈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담당자 확 인	직 성명	인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제8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조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u>국가보훈처</u> 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국가보훈부</u> ----- ----. ③ <u>보훈명예수당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u> ④ <u>보훈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u>
제4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u>괴산군</u>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u>국가보훈처장</u> 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u><신설></u>	제4조(지원대상자) ----- ----- ----- -----. ----- <u>국가보훈부장관</u> ----- ----- -----. <u>제4조의2(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u> ① <u>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u>

제5조(신청방법)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

② 보훈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신청방법) ①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수당-----

② 수당-----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
----- 수당 -----

② 수당-----

제8조(신청사항 변경) -----

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2. (생 략)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2. (생 략)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보훈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담당자 직함인성명인	
	예금주성명			
「과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제8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산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수당 -----

1. 2. (현행과 같음)

제10조(환수조치) -----

1. 2. (현행과 같음)

3. ----- 수당 -----

<별지 제1호서식>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보훈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담당자 직함인성명인	
	예금주성명			
「과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제8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산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괴 산 군 수

2025년 4월 25일

괴산군조례 제2952호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참전명예수당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족명예수당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4. 보훈생활보조수당이란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명예수당 등의 지원특례)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생활보조수당은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를 “제2조제1호에 해당”으로, “유족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를 “제2조제2호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과 유족명예수당 및 보훈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변경)신청서 ☐ 참전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인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보훈생활보조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1. 국가유공자확인원(참전확인용)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 지급(변경)신청서 ☐ 참전유공자 유족 보훈생활보조수당											처리기간 2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 금 계 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담당자 확 인	직 성명	인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유족 보훈생활보조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1. 국가유공자확인원(참전확인용)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조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호(전몰 군경)의 유족으로서 <u>국가보훈처</u> 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단, 제1호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을 말한다.	가.----- ----- ----- <u>국가보훈부</u> ----- -----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참전명예수당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족명예수당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u>
<u><신설></u>	4. <u>보훈생활보조수당은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u>

<신 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유족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은 매분기말 20일에 지급하고

제4조의2(명예수당 등의 지원특례)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생활보조수당은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제2조제1호에 해당 -----
----- 제2조제2호에 해당 -----

-----.

② 참전명예수당과 유족명예수당 및 보훈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

③ 수당-----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 · ⑤ (생 략)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
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참전명
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 지원대
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
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1. · 2.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

----- 수당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신청사항 변경) -----
----- 수당-----

-----.

1. ·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예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담당자 확인 직성명 인
	예금주성명						
「과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과산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1. 국가유공자확인원(참전확인 8)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변경)신청서 ☐ 참전유공자 보훈생활보조수당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예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담당자 확인 직성명 인
	예금주성명						
「과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과산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1. 국가유공자확인원(참전확인용)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 지급(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참전유공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예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담당자 확인 직성명 인
	예금주성명						
「과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과산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1. 국가유공자확인원(참전확인용)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세력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 지급(변경)신청서 ☐ 참전유공자 유족 보훈생활보조수당							처리기간 20일
참전유공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예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담당자 확인 직성명 인
	예금주성명						
「과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유족 보훈생활보조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과산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1. 국가유공자확인원(참전확인용)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세력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괴 산 군 수

2025년 4월 25일

괴산군조례 제2953호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훈명예수당은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4. 보훈생활보조수당은 제3호의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 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훈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71호

과 산 군 보
부 칙

2025. 4. 25.(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조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u>보훈명예수당은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u> 4. <u>보훈생활보조수당은 제3호의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u> <u>제7조의2(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 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보훈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u>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훈번호									
모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모훈생활보조수당 지급 변경신청서 []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보훈구분 주관번호 □□□□□□ 주소 (전화번호)									
예금 계좌	예금 기관명	예금주성명	계좌 성명 (인)	계좌 성명 (인)	계좌 성명 (인)	계좌 성명 (인)	계좌 성명 (인)	계좌 성명 (인)	계좌 성명 (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변경내용									
『과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모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과산군수 귀하									
구 비 지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호서식]									
보훈번호									
모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모훈생활보조수당 지급변경신청서 []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보훈구분 주관번호 □□□□□□ 주소 (전화번호)									
예금 계좌	예금 기관명	예금주성명	계좌 성명 (인)	계좌 성명 (인)	계좌 성명 (인)	계좌 성명 (인)	계좌 성명 (인)	계좌 성명 (인)	계좌 성명 (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변경내용									
『과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모훈명예수당, 모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과산군수 귀하									
구 비 지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괴 산 군 수

2025년 4월 25일

괴산군조례 제2954호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괴산군립 치매전담 요양원”이라(이하 “시설”이라 한다) 한다.

② 시설은 “괴산읍 동부리 58-19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운영) 시설의 운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5조(이용 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 판정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등
2.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요양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

제6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이용료)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제46조를 따른다.

제8조(위탁 및 운영 보조)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받은 지원금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운영기간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비 등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괴 산 군 수

2025년 4월 25일

괴산군조례 제2955호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후계농업인”이란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1171호

과 산 군 보
부 칙

2025. 4. 25.(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71호

과 산 군 보

2025. 4. 25.(금)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과 산 군 수

2025년 4월 25일

괴산군규칙 제1443호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3]

괴산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 (제11조제1항 관련)

1. 모양 및 색상



인증번호: ○○○○-○○○○-○○○○

2. 도안 설명

- 충북 괴산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청정괴산 자연올림”)에 바탕하여, 지역인증제로서 “자연올림 괴산푸드”를 활용
- ‘자연올림 괴산푸드’는 무제초제 이상 지자체 인증을 받은 괴산푸드로서 청정괴산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자란 고품질 농특산물의 본질을 표하고 있음
-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정성껏 가꾼 최상의 괴산푸드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온전하게 전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괴산푸드 인증상표임

3. 인증번호 부여 방법

가. 괴산푸드 도안 아래 인증번호를 추가 사용한다.

나. 인증번호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인증연도) (분류번호) (일련번호)

- 인증연도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연도를 표기한다.
- 품목별 분류번호는 “별표 1”의 “분류번호”에 의한다.
- 일련번호는 인증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 예시

- 2021년도에 과수품목 “배”를 첫 번째로 인증 받은 경우
 「2021 - 0201 - 0001」로 표기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과산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제11조제1항 관련) 1. 모양 및 색상  인증번호: 0000-0000-0000 2. 도안 설명 - 충북 과산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과산순정농부")에 바탕 하여, 지역인증제로서 "순정농부 과산푸드"를 활용 - "순정농부 과산푸드"는 무제초제 이상 지자체 인증을 받은 과산푸드로서 청정 과산이 주는 자연 그대로를 골문게 담아 전하겠다는 농부들의 마음을 표하고 있음 - 순정농업을 통해 정성껏 가꾼 최상의 과산푸드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온전하게 전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과산푸드 인증상표입 3. 인증번호 부여 방법 가. 과산푸드 도안 아래 인증번호를 추가 사용한다. 나. 인증번호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0000 - 0000 - 0000 (인증연도) (분류번호) (일련번호) - 인증연도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연도를 표기한다. - 품목별 분류번호는 "별표 1"의 "분류번호"에 의한다. - 일련번호는 인증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 예시 - 2021년도에 과수품목 "배"를 첫 번째로 인증 받은 경우 「2021 - 0201 - 0001」로 표기한다.		<별표 3> [별표 3] 과산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제11조제1항 관련) 1. 모양 및 색상  인증번호: 0000-0000-0000 2. 도안 설명 - 충북 과산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청정과산 자연올림")에 바탕하여, 지역인증제로서 "자연올림 과산푸드"를 활용 - "자연올림 과산푸드"는 무제초제 이상 지자체 인증을 받은 과산푸드로서 청정과산에서 정성껏 가꾼 최상의 과산푸드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음 -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정성껏 가꾼 최상의 과산푸드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온전하게 전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과산푸드 인증상표입 3. 인증번호 부여 방법 가. 과산푸드 도안 아래 인증번호를 추가 사용한다. 나. 인증번호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0000 - 0000 - 0000 (인증연도) (분류번호) (일련번호) - 인증연도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연도를 표기한다. - 품목별 분류번호는 "별표 1"의 "분류번호"에 의한다. - 일련번호는 인증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 예시 - 2021년도에 과수품목 "배"를 첫 번째로 인증 받은 경우 「2021 - 0201 - 0001」로 표기한다.		

사방지 변경 지정 · 고시

2025년 사방사업 사후관리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1일

괴 산 군 수

1. 사방지 변경 지정 내역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도면번호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지정면적(㎡)	변경지정면적(㎡)		
계				3필	272,906	343	414	괴산 2025	계류보전
괴산	청천	삼락	263	구	565	185	238		
괴산	청천	삼락	산24-1	임	246,832	-	18		
괴산	청천	삼락	산25	임	25,509	158	158		

2. 지정사유 : 2025년 사방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재해 예방

3. 지정연월일 : 2025. 04. 21.

4.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5.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벌채·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117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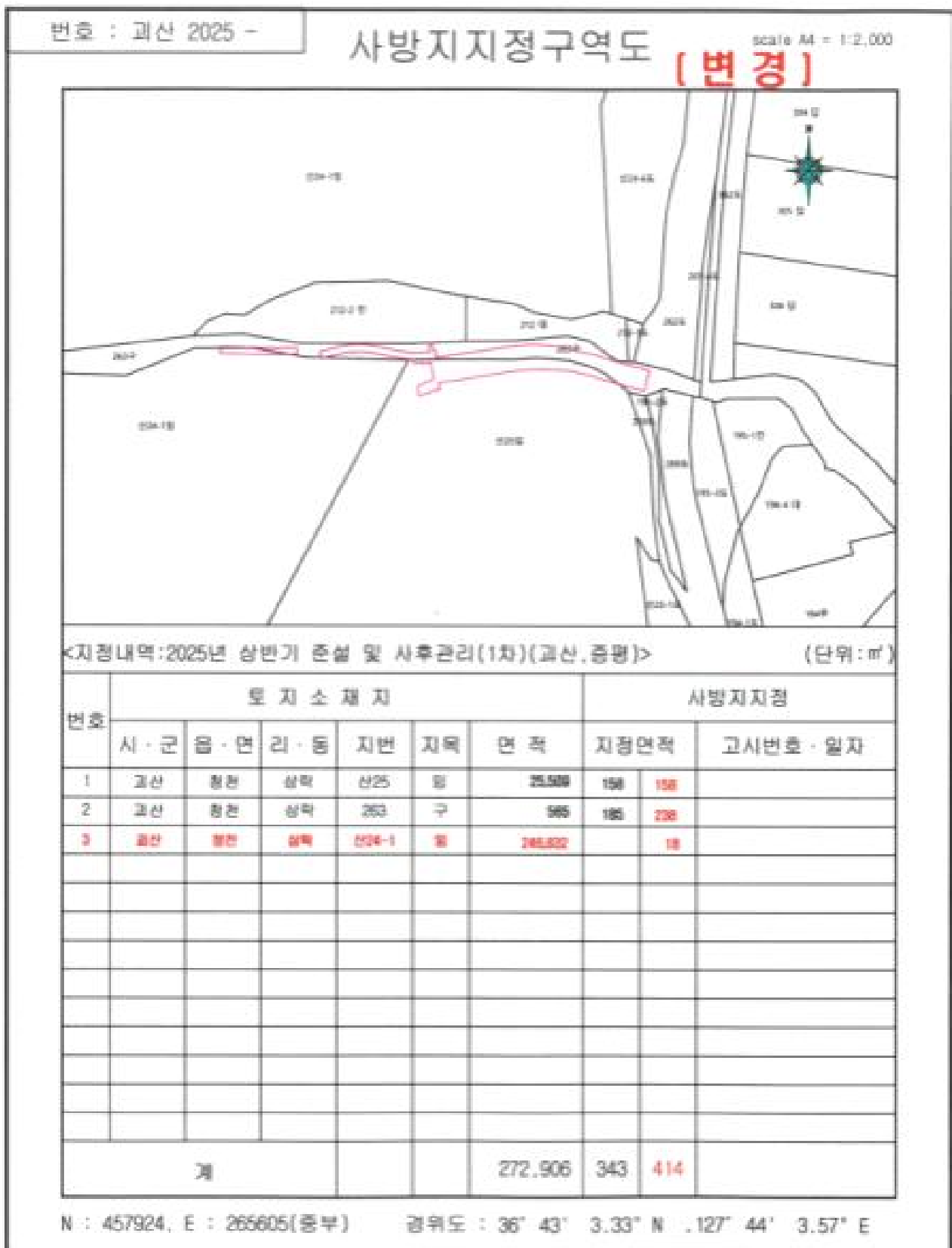
괴 산 군 보

2025. 4. 25.(금)

6. 기타사항 : 사방지 변경 지정 구역도는 괴산군청 정원산림과에 비치

※ 문의처 : 괴산군청 정원산림과(☎ 043-830-3256)

붙임 사방지 변경 지정 구역도 1부. 끝.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괴산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괴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편의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안 제20조제2항)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의 농촌체류형 쉼터

4. 개정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25. 4. 25. ~ 2025. 5. 15. (20일간)

6. 의견제출

가. 위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5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팩스(FAX) 또는 괴산군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괴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라. 문의 및 제출처 : 괴산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

- 전 화 : 043-830-3092 (FAX : 043-832-1016)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및 괴산군 홈페이지
- 주 소 : (28026) 괴산군 괴산읍 임걱정로 90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7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농촌체류형 쉼터(공장에서 제작된 조립식패널구조 또는 컨테이너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해당하며, 이와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량철골조, 강파이프조, 일반목구조의 비가림 시설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 항제2호라목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제1호에 따 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생략)	7. ----- ----- ----- ----- 가. (현행과 같음)
<u><신설></u>	<u>나. 농촌체류형 쉼터(공장에</u> <u>서 제작된 조립식패널구조</u> <u>또는 컨테이너로 연면적 3</u> <u>3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해</u> <u>당하며, 이와 연결하여 설</u> <u>치하는 경량철골조, 강과</u> <u>이프조, 일반목구조의 비</u> <u>가림 시설을 포함한다)</u>
나.·다. (생략)	다.·라. (현행 나목 및 다목 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체

□ 개정(안) 제20조 개정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홍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홍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횃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횃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⑩ 삭제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농촌체류형 쉼터·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식물공장(「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시창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 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해당 가설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마.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막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1의2.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붕괴위험지역
-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

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 2) 농업인들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
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원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편입되는 토지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원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공고기간 : 2025. 4. 25. ~ 2025. 5. 12.(17일간)
3. 공고방법 : 괴산군청 및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토지보상협의 공시송달
 - 가. 협의방법 : 소유자 개별협의
 - 나. 협의장소 : 괴산군청 안전정책과 재난복구팀(☎043-830-3619)
 - 다. 보상내역 : 보상내역 및 금액의 경우 협의 장소에서 확인·열람 가능
 - 라.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매도용 1부, 보상금수령용 일반 1부)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지이력 포함), 통장사본 1부, 인감도장
5. 공시송달 대상

소재지	지 번		지목 (종류)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입			주 소 (등기부등본상)	성 명	주소	성명	
연풍면 원풍리	638	638	답	1217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322	나병길	-		(1/1)
연풍면 원풍리	651	651-4	답	7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신흥2길 18	최철성	-	-	(1/1)

소재지	지 변		지목 (종류)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입			주 소 (등기부등본상)	성 명	주소	성명	
연풍면 행촌리	69	69	천	160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367	김수만	-	-	(1/1)
	72	72	천	249					
연풍면 원풍리	804-8	804-8	제	29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120	김칠봉	-	-	(1/1)
	804-3	804-3	천	67					
연풍면 행촌리	399	399-2	목	6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연풍로행촌3길 133	정해용	-	-	(1/1)
연풍면 행촌리	321-2	321-2	임	13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향교로홍문길 9	장석복	-	-	(1/1)
	321-1	321-1	제	81					
연풍면 행촌리	320	320	임	22	불명	임순심	-	-	(1/1)
	320-1	320-1	제	519					
연풍면 행촌리	322	322	임	1685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00	고봉훈	-	-	(1/1)

6. 기 타

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그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 합니다.

나. 기간 내 미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 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괴산군청 안전정책과 재난복구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